

[별표 1] <개정 2015.1.6.>

소방시설(제3조 관련)

1. 소화설비: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소화기구

- 1) 소화기
- 2) 간이소화용구: 에어로졸식 소화용구,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
- 3) 자동확산소화기

나. 자동소화장치

- 1)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
- 2)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
- 3)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
- 4) 가스자동소화장치
- 5) 분말자동소화장치
- 6) 교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

다. 옥내소화전설비(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)

라. 스프링클러설비등

- 1) 스프링클러설비
- 2)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)
- 3)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

마. 물분무등소화설비

- 1) 물 분무 소화설비
- 2) 미분무소화설비
- 3) 포소화설비
- 4) 이산화탄소소화설비
- 5)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
- 6)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
- 7) 분말소화설비
- 8) 강화액소화설비

바. 옥외소화전설비

2. 경보설비: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단독경보형 감지기

나. 비상경보설비

1) 비상벨설비

2) 자동식사이렌설비

다. 시각경보기

라. 자동화재탐지설비

마. 비상방송설비

바. 자동화재속보설비

사. 통합감시시설

아. 누전경보기

자. 가스누설경보기

3. 피난설비: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피난기구

1) 피난사다리

2) 구조대

3) 완강기

4)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(이하 “화재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것

나. 인명구조기구

1) 방열복

2) 공기호흡기

3) 인공소생기

다. 유도등

1) 피난유도선

2) 피난구유도등

3) 통로유도등

4) 객석유도등

5) 유도표지

라.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

4. 소화용수설비: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상수도소화용수설비

나. 소화수조·저수조,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

5. 소화활동설비: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제연설비

나. 연결송수관설비

다. 연결살수설비

라. 비상콘센트설비

마. 무선통신보조설비

바. 연소방지설비